

「구미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김민성 의원 외 1인

2. 찬 성 자 : 강승수 의원 외 19인

3. 제안이유

-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심의하고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성을 높이고,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목적에 관한 사항(안 제1조)
- 용역과제 중복 선정 금지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(안 제9조~제11조)
- 용역실명제에 관한 사항(안 제12조)
- 용역 결과에 관한 사항(안 제15조~제17조)

5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「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」 제53조, 제54조
-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
- 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8조, 제22조

6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

- 구미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일반기준을 마련하여 정책연구용역의 투명성·공정성·책임성을 더욱 확실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개정의 주요내용은 유사·중복과제 선정 금지,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·운영, 용역실명제, 공개경쟁에 의한 연구자 선정, 용역결과의 공개·평가·활용 등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심의하고 효율적인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례안의 법규형식, 내용 등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- 또한,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연구용역의 문제점인 과도한 연구 용역 발주, 연구결과의 활용 부족 등 비효율적인 예산활용을 방지하고, 대통령령인 “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” 제54조 2항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정책연구용역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- 집행기관에서는 내실있고 효율적인 정책연구용역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통한 용역대상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, 용역결과를 시정 전반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.
- 또한, 부칙으로 「구미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폐지함으로써,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‘구미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’가 폐지됨에 따라 「지방재정법」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의 대상이 되는 용역을 제외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대상이었던 종합기술용역 및 공사설계용역의 사전심의절차가 사라지게 됨. (※별표 참고)
- 이로인한 무차별적인 용역 예산 편성 및 미흡한 사업 계획 등의 행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연구용역부서 및 예산심사 부서에서는 기본계획 및 기준수립을 철저히 하여 용역대상 선정이 명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.

※ 별표 - 참고자료

○ 최근 3년간 용역과제 사전심의 현황

연 도	구 분	건 수	비 고
2024년	전체심의대상	73	개최 횟수 1회 (10월)
	정책연구용역	64	
	설계+기술용역	9	
	설계용역	9	
기술용역	-		
2023년	전체심의대상	86	개최 횟수 2회 (6월, 11월)
	정책연구용역	65	
	설계+기술용역	21	
	설계용역	21	
기술용역	-		
2022년	전체심의대상	75	개최 횟수 2회 (8월, 10월)
	정책연구용역	60	
	설계+기술용역	15	
	설계용역	15	
기술용역	-		

※ 「구미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폐지로 인해 학술용역(정책연구용역)을 제외한 용역(종합기술용역, 공사설계용역)의 사전심의 절차 폐지.

○ 개정 전후 적용범위 비교

구분	내 용
개정 전	심의 대상 1. 학술용역 및 종합기술용역 : 1천만원 이상 2. 공사설계용역 : 3천만원 이상
	예외 사유 1. 「지방재정법」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사업 2. 국·도비 보조사업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3. 천재지변, 재난복구 등 긴급하게 필요한 사업의 용역 4. 시설의 유지·위탁관리 등 계속·반복적으로 시행하는 용역
개정 후	심의 대상 모든 정책연구용역
	예외 사유 1.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 2. 전액 국비 또는 도비,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 3.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정책연구용역 4. 예산 편성목 “시설비 및 부대비”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과 감리용역 5. 기술용역 및 디자인·전산개발·임상연구·회계용역·단순 설문조사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반 용역 6.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, 법정 감염병 방제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